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07 발의연월일: 2020. 11. 9.

발 의 자:윤재갑·김승남·민홍철

이정문・홍문표・이상직

김윤덕 · 이동주 · 이개호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농업부문의 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등이 시행 중이고, 수산 부문의경우에도 FTA피해보전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의 직접지불제도가 시행 중임.

그런데 임업은 농업 및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온실가스 흡수 · 저장,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휴양치유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큰 부문이지만 대부분의 산림은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등 임업경영활동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과 산림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산림보호법」 상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안 제4조).
- 다.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한 임업인등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로 함(안 제5조).
- 라.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한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함(안 제6조).
- 마.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 함(안 제7조).
- 바. 임업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한 읍·면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읍·면장은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교육이수,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 아.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 자. 특별자치시장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직불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하여 징수하여야 함(안 제15조).
- 차.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직불금 수령자의 정보 중 임업인의 성명, 임야 보유 여부, 직불금의 수령금액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함(안 16조).
- 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장, 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에 대한 감시·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 정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 접지불제도"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 2. "임업인등"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3.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이란 공기정화,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방지, 휴양·보건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말한다.
- 4. "임산물생산업"이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임업을 말한다.
- 5. "육림업"이란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보호하는 임업을 말한다.
- 6.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 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 1.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 2.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 3.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 한 자에 대한 산림보전 직접지불제도
-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 할 수 있는 자 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한 임업인등으로 한다.
 -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직접지불금(이하 "산림보전지불금"이라 한다)

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산림을 소유한 자로 한다.

- 제6조(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①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한 산지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림경영계 획에 따라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 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산지
- 5. 개발사업예정지 등 임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임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임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3.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제8조(임업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① 임업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 · 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면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 7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임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

다.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 3. 그 밖에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제11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등)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

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 ④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 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등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보관・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자격 등을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자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산림의 공익가치, 물가상 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일부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
- 제13조(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첨부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 ② 산림보전지불금에 관한 지급액은 산림보전을 위해 발생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 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처리하 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처리·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환수 및 가산금)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한다)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공익직접지불금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 1.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 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

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③ 특별자치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 상 금액 및 가산금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6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수령자: 성명, 임야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수령금액
 - 2.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처리·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

- 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지도 등의 의무)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 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도·감독·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소비자단 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

- 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에 대한 감시·지도 •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 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 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
-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 2.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도 거짓으로 확인하여 준 자
-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 련된 서류를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